



제 422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55호)

2025.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의 유기·방사행위 금지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홍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2. 18.

다. 회 부 일 :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소유자등(동물의 소유자 및 일시적·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

로써, 길고양이 등의 동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항 제5호 및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의 유기·방사행위 금지

현행법은 소유자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 또는 방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제5호 및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② (생략)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u><신설></u>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 또는 방사하는 행위. 다만, 제34조</u>

현행	개정안
④·⑤ (생략) 제97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1. ~ 8. (생략) ⑤·⑥ (생략)	<u>에 따른 구조·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④·⑤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u>제10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서 유기 또는 방사한 자</u> 2. ~ 9.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최근 길고양이를 유인하여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 등에 유기·방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¹⁾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음.

1) 충청투데이(2022. 2. 14.) 영역동물 고양이 낚신 곳 방사... 교묘해진 동물학대
한국일보(2023. 9. 13.) “잡아서 다른 곳으로...” 강남 아파트 고양이 ‘무단방사’ 시도 시끌
울산매일신문(2024. 11. 11.) ‘주민 피해 vs 동물 보호’...길고양이 문제 갈등 반복

특히, 오랜 관찰과 경험 끝에 행동하는 특성을 가진 영역동물인 고양이의 경우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지에서 벗어난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먹이활동이 어려워져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유자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고양이와 같은 영역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0조제3항제5호 중 ‘기존의 활동 영역’, ‘현저히 벗어난 장소’는 동물의 종별, 상황별로 다를 수가 있는바, 특히,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되고 있는 고양이의 경우에도 먹이자원이 얼마나 풍부한지에 따라 행동반경이 다양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²⁾

이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현행법에는 동물학대 금지행위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물을 폭서·혹한 등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로 고통·상해를 입히게 되면 처

2)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2023. 12. 26., p.11 참조

별3)하고 있어, 길고양이 등을 본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 등에 유기·방사하는 행위도 일정 부분 규율이 가능하고,

거주지역 내 길고양이의 지나친 개체 수 증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고양이 이주 방사를 교육지책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적 상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함.

첫째, 안 제10조제3항제5호는 포획하여 유기·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상을 ①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②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로 정하고 있는데,

안 제97조제4항제1호에서는 보호 대상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 외에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은 제외하고 있는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한 포획 및 유기·방사 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둘째,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길고양이 이주 방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으나, 그러한 이주 방사가 안 제10조제3항제5호 단서에 포섭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 등에 대한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물 종류에 따라 해당 동물을 다른 곳에 방사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구체적인 영향, ‘기존의 활동 영역’ 및 그곳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관한 판단기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인천광역시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치료 또는 중성화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포획장소에 방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서식지 환경문제나 안전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포획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방사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금지 행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제34조에 따른 구조·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위의 사례가 포섭되지 않으므로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길고양이 관련 사업에

4)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은 길고양이를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4

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동물에 대한 세부 처리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